

## 장애인이 행복한 충남

성태규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장

### I. 들어가며

산업화와 각종 환경요인에 의해 장애인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15종으로 장애범주가 확대되어 장애인 등록이 매분기 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절대적 빈곤의 시대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을 중시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전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도 더 이상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 II. 장애인 관련 법 제·개정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장애인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반영되었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어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법에 의해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부여되었다.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역시 도입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임신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해야 하게 되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도 제고되었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 인식개

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게 되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개선하였다.

2007년에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법에서는 법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차별사유로서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도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만3세~만17세까지의 장애학생에 대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이 도입되었다. 현행법의 초·중등 과정에서 유치·고등과정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된 것이다. 전공과 과정과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도입되었고, 장애 대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 각 대학교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도 법률로 보장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 Ⅲ. 장애인복지의 과제

장애인의 복지수요는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장애유형에 구별없이 장애인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정된 삶을 위한 생활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수당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되어야 한다. 모자보건, 성인병 및 노인성 질환의 예방 관리,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 등 장애발생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장애예방사업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할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및 복지정보 체계공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복지인프라의 확충도 요구된다. 저소득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복지시설간의 기능을 특화하고, 시설간 활용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재가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활성화, 재활보조기구의 보급, 장애인 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여성장애인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의 방향을 생활시설의 서비스 개선이나 시설확충에서 지역사회로의 통합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시설 신규설치와 예산지원을 놓어준, 도시, 산간지역의 소외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활전문인력의 보수체계와 복지개선책을 마련하여 직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활한 이동 및 접근을 위한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이용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교통관련 제도도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직업재활이 강화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직업적 중증 장애인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인적자원을 개발·강화해야 한다. 당사자중심의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무고용사업체 및 공공영역에 선도적으로 장애인고용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대응한 직업재활을 확대하고 고용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과의 통합교육과 정보화로 확대 추진된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의 환경을 조성하고, 특수교육 전문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보교육 활성화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의 인권신장도 모색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며, 권리에 기반한 복지서비스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의 조성이 요구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 IV. 맺는 말

장애인은 정상인과 더불어 같이 생활해야 할 이웃이다. 충남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장애인의 편안한 삶을 실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장애인은 더 이상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과거 '재활'이라는 소득적 복지차원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이라는 적극적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